

창원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나109910(본소), 2023나109927(반소) 판결
[공사대금 · 하자보수비용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나109910(본소), 2023나109927(반소)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가단123222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윤

담당변호사 박세영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성환, 신정인

변론종결 2024. 9. 5.

판결선고 2024. 11. 14.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가단123222(본소), 2023가단 103492(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6,222,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7,209,147원과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나. 반소: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서 강조하여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및 추가 판단

가.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마지막행 각주 1)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11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7개 항목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추가공사대금 66,222,000원(= 감정결과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91,562,000원에서 하자보수비 25,340,000원을 공제한 금액)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추가공사의 시행이나 공사금액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1행 “E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G(갑 제6호증의 1, 제8호증의 1에 날인된 인영이 “G”로 되어 있고, 갑 제6호증의 2, 제8호증의 2에 첨부된 신분증도 모두 “G”의 것인 점에 비추어 갑 제6호증의 1, 제8호증의 1의 각 사실확인서 중 확인자 이름란의 “E”은 “G”의 오기로 보인다)은』

- 제1심판결문 제4쪽 10, 11행의 “원고가 이러한 공사를 추가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시행할 이유도 없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가 사전에 피고와 아무런 의사 교환이 없었다면 추가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이러한 공사를 시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민원 발생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콘크리트 옹벽 설치, 펜스 변경 설치 등을 하기로 하였다거나, 원고의 과실로 도로 포장을 훼손하여 스스로 이를 복구한 것이라거나, 도로 측면 보강토 옹벽 공사는 피고가 시공 재료비만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나, 피고의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12, 13행의 “없는 점(원고는 추가공사 관련 견적서를 공사 이후 피고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및 각주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없고,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본공사가 완료된 후 2019. 5. 중순에야 추가공사의 견적서 및 내역서를 피고에게 제시한 점』

○ 제1심판결문 제8쪽 6행 “그러나” 다음부터 같은 쪽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설계변경비를 추가로 지출한 것이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1행 “판결이유에” 다음부터 같은 쪽 5행 “비추어 보면”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의하면, 위 판결에서 ‘피고의 건물철거, 기초 굴착작업, 중장비 운행 등으로 인하여 F 소유 주택의 벽과 담장 균열이 확대되거나 새로운 균열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본공사 이전에 기존 건물의 철거 단계부터 관여하지는 않은 점, 또한 인근 건물에의 피해 가능성을 예견하여 공사현장 지반에 대한 지질조사나 인접 건물 현황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는 것이 전적으로 시공사인 원고의 책임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제1심판결문 제10쪽 8행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쳐 쓴다.

나. 추가 판단(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91,562,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주택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민사소송절차에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원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 또한 당사자도 주장입증을 통하여 그 감정결과의 당부를 다룰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판결 참조). 또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결과 전부를 배척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더하여, ① 피고의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는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추가 공사진행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바, 비록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명시적으로 추가공사대금 액수나 산정방식을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는 적어도 이 사건 도급계약과 동일한 대금 산정방식에 의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사전에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출한 비용에 거래관행에 따른 상당한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사후에 공사대금으로 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112138, 112145 판결 참조), 이 사건 감정결과는 이 사건 추가공사 완료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21. 5.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도급계약이나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했던 견적서와 달리 보험료 등 제경비, 15%의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공사내역의 경우 피고 스스로 산정했던 순공사비의 3~4배에 이르는 금액이 산정되는 등 이를 그대로 채택하기에 어려운 요소들이 존재하는 점, ③ 원고는 공사 완료 이후 2019. 5.경부터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26,200,000원으로 기재한 견적서 및 내역서를 제시하면서 위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21. 5.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도 여전히 위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삼았던 점, ④ 달리 원고가 위 견적서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추가공사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알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금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감정결과를 두고 이를 곧바로 원고가 실제로 수행한 추가공사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추가공사대금 산정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원고는 제1심 소송계속 중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25,340,000원의 하자보수비용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2022. 10. 5.자 준비서면),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한 공사대금에서 위 하자보수비용을 스스로 공제하여 본소청구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2022. 10. 5.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를 인정할 수 없고, 단지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이 산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자보수비용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원고의 당초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은엽, 판사 김주미, 판사 박애경